

제333회 정례회  
교통위원회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5. 12

서울특별시의회  
이원형 의원(더불어민주당, 비례)

-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이원형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최근 처방약, 향정신성 의약품, 수면제 등 약물 복용 이후 인지·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발되거나,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는 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약물 복용 후 운전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아, 관련 법령의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이에 음주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시민 인식 제고 및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.
-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안 제5조제2항에 술에 취한 상태와 과로·질병, 약물 복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

- 특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물론,  
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모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 
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부적정 운전을 폭넓게 예방하고,  
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.
  
-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  
아무쪼록 동 조례 개정을 통해  
음주 및 약물 운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 
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확립에  
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감사합니다.